

**연사 1**

본 자료는 발표자의 주관적 발표내용으로  
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국민건강T/F의 공식입장은 아님을 미리 밝혀둡니다.

**선진적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방안**

**김 용 상 DVM, Ph.D**

국무조정실 국민건강T/F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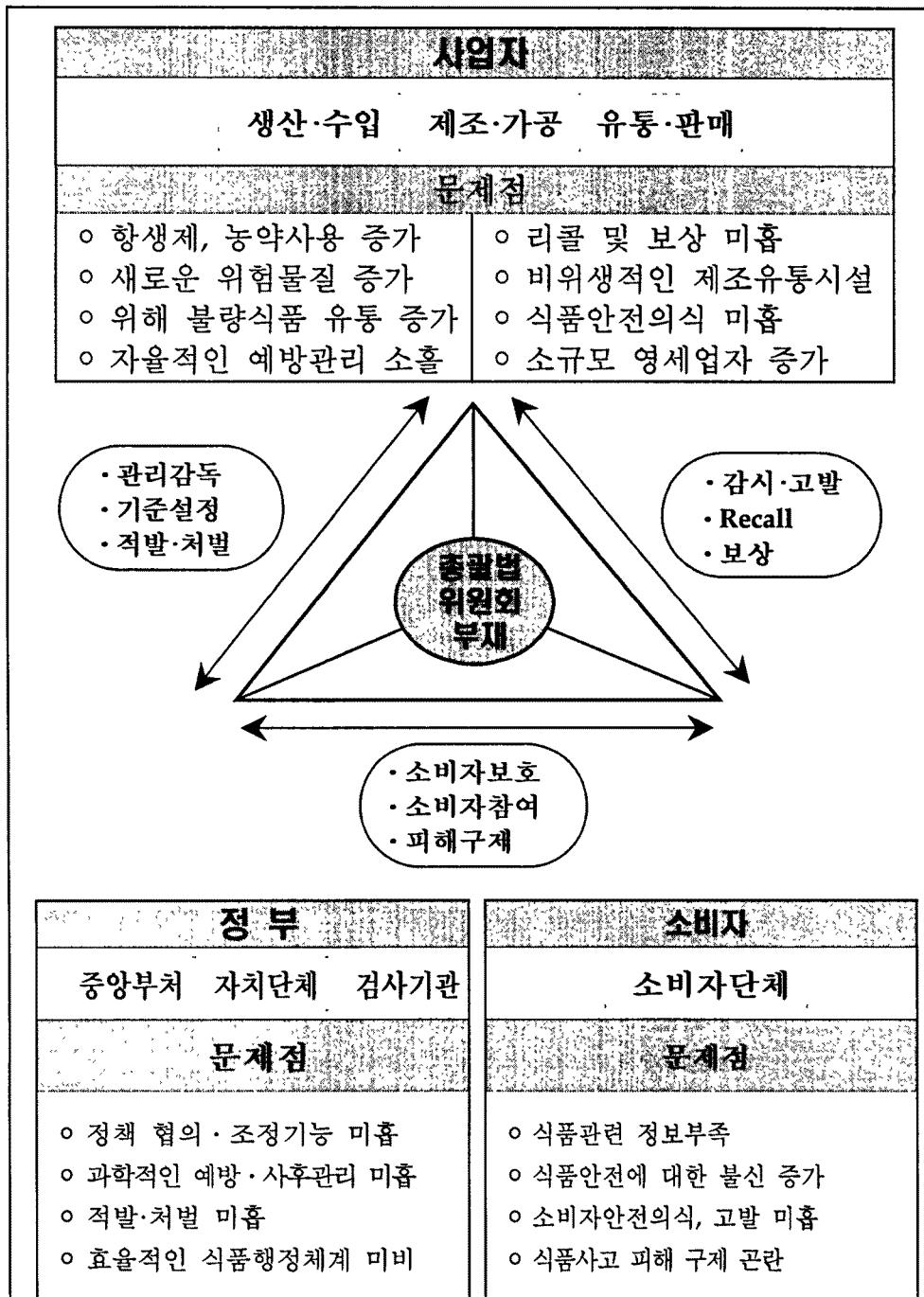
## 목 차

I.	현황 및 문제점 .....	4
II.	추진목표 및 전략 .....	5
III.	주요대책 .....	6
1.	사전예방 철저 .....	6
2.	사후관리 강화 .....	8
3.	기반구축 .....	11
IV.	식품안전기본법제정안 주요내용 .....	14

### < 별첨 >

1. 식품종류별 위험평가관리업무 소관현황
2. 7개국의 식품안전관리통합 사례
3. 식품안전기준설정 외국사례 비교
4. 외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 개편사례
5. WHO/FAO 식품안전관리강화지침
6. 식품안전기본법(안) 개요
7. 식품안전기본법(안) 주요내용

## I. 현황 및 문제점



## II. 추진목표 및 전략

### 국민의 신뢰성 제고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성 확보



#### 사전예방



#### 사후관리



#### 기반 구축



##### 제도개선

- 식품안전목표 설정
- 우수농수산물 관리제도 정착
- 집단소송제 도입

##### 의식개선

- 사업자에 대한 전문교육
- 소비자 교육

##### 적발·처벌 강화

- 취약분야 점검강화
- 위생점검 실명제 도입
- 위반자 제재 강화

##### 신속한 사고 대응

- 신속한 원인규명
- 위기대응체계 구축
- 자발적 회수 의무화

##### 식품산업 진흥

-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 마련
- 식품산업발전법 제정
- 식품진흥기금 활용

##### 행정체계 정비

-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신설
- RA 조직 강화
- 집행업무 지자체로 이관

### III. 주요대책

#### 1. 사전예방철저

##### 가. 제도개선

###### 현황 및 문제점

###### □ 사전모니터링 시스템 미흡 및 수치화된 식품안전목표 부재

-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이 미흡하여 식품안전수준에 대한 평가가 어렵고 취약식품을 파악하기 곤란
  - ※ 쇠약청은 25종, 600 샘플의 농산물에 대해서만 잔류농약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, 농림부는 잔류항생물질 모니터링시 일부 항목만 검사할 수 있는 간이검사 방법을 사용
- 미국, EU 등과 같이 정부의 식품중 유해물질오염수준 목표치인 식품안전관리목표 (FSO)가 없어 식품안전 관련 기관의 동기 유발 미흡
  - ※ 미국 식품안전위원회는 달걀의 살모넬라에 의해 발생하는 식중독 발생건수를 '98년의 인구 10만명당 1.9명에서 '05년 0.95명으로 감축 목표 설정

###### □ 생산수입단계의 안전관리 제도 미흡

- 농약, 항생제 사용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하는 우수농수산물 관리 제도의 도입 및 정착 미흡
- 생산자 표시가 없는 농축수산물은 부적합 판정이 나더라도 생산자를 알아내기 곤란 하여 암류·폐기 곤란
- 수입농산물에 대해 위생관리를 수출국에 요구하는 위생협정의 체결 전무
  - ※ 축산물은 29개국과, 수산물은 2개국과 체결
- 동일한 수입회사가 기존과 동일한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일정기간 정밀검사를 면제 하고 있어 제도 악용 소지
  - 현재 농산물은 1년, 기타 가공품 등은 3년 동안 정밀검사 면제
  - ※ 농산물은 국내소비량의 43.9%, 수산물은 29.8%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수입 과정에서의 효과적인 검사제도 등이 매우 중요

###### □ 제조·가공·유통단계의 안전관리제도 미흡

- 식품안전을 해칠 수 있는 위해요소의 혼입을 막기 위한 위해요소증점관리제도 (HACCP)의 적용 대상 미흡
  - ※ 적용품목이 일반식품 3%(10개/315개), 축산물 13%(13개/105개)에 불과
- 농수산물 집하장, 도매시장 등 도매단계에서의 식품안전검사제도가 미흡하여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 방지 곤란

###### □ 소비자보호를 위한 식품안전기준 설정 등의 미흡

- 새로운 위해요소에 대한 안전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식품소비패턴을 고려하지 않고 외국의 안전기준 차용
  - ※ '99년 다이옥신 사고에도 불구하고 안전기준이 아직까지 미설정되어 있고, '98년 이전에 설정된 잔류농약기준은 단순히 외국자료 인용
- 식품제조·가공에 사용한 원료를 5가지만 표시
  -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해야하는 식품대상에서 어린이가 많이 섭취하는 스낵, 햄버거, 샌드위치 등은 제외
- 소비자 참여 및 권리구제 미흡
- 식품안전정책을 심의하는 각종 위원회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참여가 미흡하여 소비자 의견을 반영하기 곤란
- 식품사고시 소액,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여 소비자들이 소송 등을 통해 피해를 보상 받기 곤란

### 개선 방안

-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의 개선 및 구체적 식품안전목표 설정
- 사전모니터링시 표본대상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모든 항생물질 등을 검출할 수 있는 정밀검사방법 사용
- 수치화된 식품안전 목표관리제도(FSO) 도입
- 생산·수입단계 안전관리제도 개선
-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우수농산물관리제도(GAP) 조기 정착
- 부정·불량식품을 신속히 추적하기 위한 이력추적시스템 구축
- 농산물 주요 수입국인 중국 등과 위생협정체결 추진
- 동일식품 재수입시 위해우려식품 중심으로 수시검사 강화
- 제조·가공·유통단계 안전관리제도 개선
- 위해요소중점관리(HACCP)제도의 시행 대상 품목 확대
- 도매시장에 대한 안전검사를 강화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
  - 지방자치단체는 도매시장의 농수산물에 대해 매일 수거검사 실시
- 소비자보호를 위한 식품안전 기준 등의 개선
- 신규 위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외국에서 차용한 안전기준을 우리 실정에 맞게 현실화
- 식품에 사용한 모든 원료를 표시하도록 하고, 영양표시 의무화 대상을 어린이가 많이 섭취하는 식품으로 확대
- 소비자 참여 및 소비자 권리구제 강화

- 각종 위원회에 시민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
-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신설
- 소비자의 민원사항을 신속해결하기 위해 식품음부즈멘제도 도입

#### 나. 의식개혁 및 홍보강화

##### **현황 및 문제점**

- 사업자 등의 낮은 안전의식
  - 농약 및 항생제 안전사용에 대한 의식부족으로 농어민들이 농약 및 항생제 과다 사용
  - 식품업소 대부분이 종업원 10인 미만의 영세업소로서 사업자 및 종업원의 식품안전 의식 미약
- 소비자의 안전의식 미약
  - 식중독사고 증가 등으로 국민들이 식품안전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안전에 대한 실천의식은 부족

##### **개선 방안**

- 사업자 등에 대한 식품안전교육 강화
  - 농약 및 항생물질 등 잔류허용기준 위반 농가를 대상으로 의무적인 안전교육 실시
  - 사업자 등에 대해 관련 업종별로 전문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지원
    - 소비자보호원, 보건산업진흥원 등으로 교육기관 확대
- 소비자 교육 강화
  - 초·중·고 교과서에 식품안전의 중요성 등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여 안전의식의 변화 유도
  - 언론매체·지하철 등을 활용하여 공익광고를 실시하고 홍보 드라마 등을 제작하여 소비자 교육 강화
  -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등을 활용하여 의식개혁 캠페인 전개

#### 2. 사후관리 강화

##### 가. 적발처별 강화

##### **현황 및 문제점**

- 취약 분야에 대한 관리 미흡

- 일부 지자체 위생부서는 법령위반행위 적발시 처리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취약분야에 대한 검사 미흡
  - ※ 식품안전관리지침에서는 재래시장 등 위생취약지역에서의 수거비율을 50%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나, 광주시 농·수산물 재래시장 수거비율은 4.2%('04.5월 기준)
- 법 위반전력이 있는 업소에 대한 집중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불법행위가 계속될 우려
- 위생점검시 담당공무원의 형식적인 감시 빈발

**□ 식품사고 유발자에 대한 제재 미흡**

- 고의로 불량·유해식품을 제조·유통한 사업자에 대해 경미한 형량선고나 단순한 행정처분을 부과
- 식품사고 유발자의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가 없고 형사고발기준도 미비
  - ※ '03년 총 16,064건의 위반행위 중 형사고발 243건(4.4%)

**개선 방안**

**□ 취약 분야에 대한 감시 강화**

- 사고발생 빈도 등을 감안하여 재래시장, 유원지 등 취약분야에 대한 수거검사 횟수를 늘리고 검사결과를 인터넷에 공개
- 법 위반전력이 있는 업소에 대한 집중관리제를 도입하여 검사횟수 및 강도를 대폭 강화
- 담당 공무원이 구체적인 점검내역을 점검업소가 보관중인 「출입·검사기록부」에 기록하도록 위생점검실명제 도입
  - 위생점검 결과를 데이터베이스(DB)로 구축하여 기관간 정보공유로 위생감시 효율성 제고

**□ 식품사고 유발자에 대한 제재 강화**

-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유발자는 1회 위반해도 영업폐쇄
- 불량식품, 위해식품의 제조·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형량 하한선 및 부당이득환수제(부당이득의 2배) 도입
- 위반행위 유형, 위반정도, 빈도 등을 감안하여 관련법령에 형사고발기준 마련

**나. 신속한 사고 대응**

**현황 및 문제점**

- 식중독 사고 원인규명 미흡으로 근본적 대응 곤란
  - 신고대상자가 의사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, 식중독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가

### 검물의 채취 미흡

※ '03년 식중독 발생 135건 중 원인규 불검출이 47건

#### □ 식품사고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긴급대응체계 미흡

- 식품사고 발생시 범정부차원의 대응요령, 조치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프로그램(Contingency plan) 부재  
※ '00년 "중국산 납꽃게 수입사건" 시 해당물품 회수책임소재를 놓고, 해수부, 식약청, 시·도 등 관련기관간 혼선 및 충돌

#### □ 유관 기관간 식품안전정보 공유 미흡

- 농림부, 식약청, 해수부, 지자체 간에 식품안전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신속대응 곤란  
※ '03.2~4월 정읍에서 인수공통병인 소부루세라병이 집중 발생하였음에도 농림부가 복지부로 늦게 통보하여 일부 농민이 감염되는 사례 발생

#### □ 위해식품에 대한 자발적 회수 저조

- 위해식품의 자발적 회수(recall)가 의무가 아니고 회수율도 매우 저조  
※ '03년 회수 조치된 5종의 식품 회수율은 0.68% ~ 12.8%에 불과

### 개선방안

#### □ 식중독 사고의 조속한 원인규명

- 식중독 사고의 신고 의무자에 단체급식소의 장을 포함하고, 관계부처, 시도에 식중독 24시간 신고접수창구 운영
- 식중독 피해자의 요청시 진료 의사·한의사의 가검물 채취 보관 의무화

#### □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위기대응체계 구축

- 식품 유형별, 유관기관별 긴급대응요령을 마련하고, 제정 추진 중인 가칭 "식품안전 기본법"에 법적 근거 마련  
※ 중국사례 : 조류독감 발생시 농업부와 검역총국이 협력하여 고병원성 가금류방역 긴급조치안 등 7개 긴급조치안 제정 후 시행

#### □ 「식품안전종합정보망」 구축

- 제정 추진 중인 식품안전기본법에 「식품안전종합정보망」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
- 현재 진행 중인 식품안전종합시스템 구축을 성실히 추진

#### □ 위해식품에 대한 자발적 회수(recall) 의무화

- 자발적 회수를 의무화하고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

### 3. 기반구축

#### 가. 식품산업 진흥

##### 현황 및 문제점

- 대다수 식품업체가 영세하여 식품산업구조 취약
- 종업원이 10인 이하인 식품제조업체가 전체 78천개소중 96%를 차지하여 시설 및 연구개발 투자능력 미비  
※ 식품산업체 매출액 대비 연구투자비율 : 0.69%(전체산업은 2.19%)
- 식품산업발전을 위한 종합대책 부재
- 식품의 생산·가공·유통·소비단계가 모두 연계되어 있는데 반해 관련 부처가 많아 종합 대책 마련에 애로  
※ 환경산업의 경우 환경법령에 의거 종합적인 발전대책 수립
- 문화사업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, 식품산업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 부재
- 식품진흥기금 활용 미흡
- 기금 운용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서만 갖고 있어 식품연구개발 등 국가차원에서의 활용 곤란  
※ 기금의 90% 이상이 단순 시설개선용자사업에 쓰이고, 연구·교육 분야는 1% 수준에 불과, 지자체의 집행비율이 30%에 불과 하는 등 사용실적 저조

##### 개선방안

-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 마련 및 가칭 “식품산업발전법” 제정
- 관계부처 합동으로 T/F를 구성하여 대책 및 법안 마련('05년 중)
  - 식품산업발전법에는 식품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, 식품전문인력 양성, 기술개발지원, 품질인증제도 운영 등에 대해 규정
- 식품진흥기금의 다양한 활용방안 마련
- 운영주체를 현행 지자체에서 중앙부처로 확대하고 국가차원 자금 활용

#### 나. 행정체계 정비

##### 현황 및 문제점

-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총괄조정기능 부재
- 식품안전관리대책협의회(국무조정실)는 인력(담당 1명) 및 전문성 부족으로 실질적 업무수행에 한계

※ 식약청은 외청으로서 법령 제개정권이 없는 등 식품안전정책을 주도하기 곤란

□ 다원화된 식품안전기관간 협조 미흡

- 식품안전업무가 8개 부처, 21개 법률(230개 법령)로 분산되어 있어 식품안전정책에 대해 부처간 부조화 발생
- 관련 부처간 협조 부족으로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

□ 집행기능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 발생

- 집행업무를 중앙과 지방 공통사무로 수행하여 사고 발생시 서로 책임 전가  
※ 특히, 식약청의 집행기능은 자치단체장이 식품관리인력을 축소하는 구실로 활용
- 지자체의 전문성 부족, 연고·온정주의로 지도단속 저조  
※ 지도단속 실적 : 1,726천건('95) → 750천건('01)

□ 위험평가 기관의 독립성 미흡

- 과학적 평가와 정책(안전기준 등) 결정기능이 통합되어 있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평가 곤란

**개선방안**

**« 기본 방향 »**

- 정책결정은 단일기관에서, 현장집행은 관련 기관에서 수행하는 통합체계(integrated system) 모델 추진  
※ FAO/WHO도 식품안전체계중 통합체계를 권고하고 있고, 최근 식품안전체계를 개편한 대부분 선진국도 이 모형을 채택

□ 식품안전정책의 총괄조정기능 강화

- 식품안전정책위원회(심의위원회) 신설
  - 식품안전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대형사고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조정 기구 필요  
※ 중앙부처 식품안전 조직을 통합하더라도 대상 법률은 전체 식품안전관련 21개 중 3개(식품위생법, 축산물가공처리법, 건강기능식품법)에 불과

□ 중앙부처 식품행정체계 강화

- 연구용역 등을 종합해볼 때, 3가지 대안으로 압축 가능
  - 1안 : 기존 식품안전 조직을 통합하여 식품관리처 신설

- 2안 : 기존 식품안전 조직을 복지부 또는 농림부로 통합
- 3안 : 현행 유지

□ 집행기능의 권한과 책임 명확화

- 집행업무는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수행하되, 중앙정부는 정책업무 담당. 다만, 수입식품 등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는 중앙에서 계속 담당 수행  
※ 중앙으로 완전일원화는 각 지역별 지방사무소를 신설해야 하고, 지방으로 완전일원화는 수입식품 관리에서 지방별 차이로 일관성을 유지하기 곤란

□ 위험평가업무의 전문성 및 독립성 제고

- 중앙부처의 평가기능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최대한 확보

## IV.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안 주요내용

### □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6조)

- 국무총리는 매 3년마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기초로 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
  - \* 국가 및 지자체가 식품안전에 관한 장·단기 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식품안전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식품안전정책의 수립·시행과 효과적인 식품안전수준 제고

### □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설치(안 제7조 내지 제14조)

- 식품안전정책을 종합·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
  - \* 식품안전정책을 종합·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 식품안전정책이 일관성 없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개선하고,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식품안전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식품안전정책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립·시행

### □ 긴급대응 체계 구축(안 제15조 내지 제18조)

- 국가와 지자체는 위해식품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대응방안을 수립·시행하고, 합동조사 등의 방법으로 식품의 위해원인에 대한 추적조사 실시
  - \* 위해식품의 출현에 신속 대응하고 당해 식품의 생산·판매단계에서 위해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국민 불안해소

### □ 식품 등의 위해요인에 대한 위해성평가 의무화(안 제20조)

-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식품안전기준·규격을 제·개정 또는 식품의 국민건강에의 위해여부를 판단할 경우 위험평가(Risk Assessment) 실시
  - \* 식품 안전기준을 설정할 때에 사전에 위해성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식품안전관리의 과학성 및 효율성 제고로 국민의 신뢰도 제고

### □ 식품안전관련 정보공개의 확대(안 제24조)

- 정부는 식품안전정보의 공개와 관리를 위한 체계를 구축·운영하고,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식품안전법령을 위반한 사업자 및 해당 식품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
  - \* 식품안전정보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하고 국민에게 최대한 공개함으로써 식품안전정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

### □ 식품안전관리에 있어 소비자의 참여를 강화(안 제28조 내지 제30조)

- 정부의 식품안전 관련 각종 위원회에 소비자를 참여시키도록 하고,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식품 등에 대한 시험·분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, 식품안전법령 위반 행위를 신고한 소비자가 이로 인하여 불이익 방지 규정

※ 식품안전관리에 소비자를 참여시킴으로써 소비자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안전관리의 수준을 제고시키고 소비자보호우선원칙을 확고히 규정

□ 식품안전분쟁조정 제도 도입(안 제31조 내지 제40조)

○ 국무조정실에 중앙식품안전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, 시·도에 지방식품안전분쟁조정위원회를 두며, 동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조정

※ 식품안전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가 식품 등으로 입은 소비자피해로 인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원활하게 구제

< 별첨 1 >  
식품종류별 위험평가·관리 업무 소관 현황

구 분		위험 평가	기준설정	위생관리			
				생산단계	가공단계	유통단계	수입단계
농산식품	농산물	농림부 (농산물 품질관리원)	식약청 (식품위생법)	농림부 (농약관리법, 농산물품질 관리법)	-	식약청 (식품 위생법)	식약청 (식품 위생법)
	농산 가공품	식약청 (독성연구원)	"	-	식약청 (식품 위생법)	"	
축산식품	축산물 *가공품 제외	농림부 (수의과학 검역원)	식약청 (유해성물질 첨가물) 농림부 (성분, 위생기준)	농림부 (축산물가공처리법)	-	농림부 (축산물가공 처리법)	농림부 (축산물가공 처리법, 기축전염병예방법)
	축산 가공품	"	식약청 (유해성물질 첨가물) 농림부 (성분, 위생기준)	-	농림부 (축산물 가공 처리법)	식약청 (식품 위생법)	
수산식품	수산물	해수부 (수산물품질 검사원)	식약청 (식품위생법)	해양 수산부 (수산물품질 관리법)	-	식약청 (식품 위생법)	해수부 (수산물품질 관리법) * 윤료 단순기공품 식약청 (식품 위생법) * 고자 기금품
	수산 가공품	식약청 (독성연구원)	"	-	식약청 (식품 위생법)	식약청 (식품 위생법)	
먹는 쌈물		환경부 (국립환경 연구원)	환경부 (먹는물관리법)	-	환경부 (먹는물 관리법)	환경부 (먹는물 관리법)	식약청 (식품 위생법)
주류		국세청 (기술연구소) 식약청 (독성연구원)	국세청 (시설, 첨가물) 식약청 (유해 성분)	-	국세청 (주세법)	국세청 식약청	식약청 (식품 위생법)
천일염		산자부 (대한염업조합)	식약청 (식품위생법 준용)	산자부 (염관리법)	식약청	식약청	산자부 (대한염업 조합)

< 별첨 2 >  
7개국의 식품안전시스템 통합 사례

국가	통합 이유	통합 내용
캐나다	효율성 제고(예 : 검사의 일관성, 책임성의 명확화), 중복식품안전관리 감소, 비용 절감	보건부·농업식품부·수산해양부 → 식품검사청(집행·검사기관, 농업식품부 산하), 보건부(보건정책 및 기준 설정) [‘97]
덴마크	효율성 제고(예: 소비자 커뮤니케이션, 검사의 일관성)	농업부·수산부·보건부·지방정부 → 수의식품청(식품농업수산부 산하, ‘97) → 가족소비자부로 이관 [‘04]
독일	BSE 등 식품안전문제 발생으로 공중의 우려 제기, EU 식품안전법제의 이행	보건부·식품농립부 → 소비자보호식품농업부 산하에 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, 위험평가 연구소 설치 [‘02]
아일랜드	BSE와 식품불안으로 공중의 우려 제기, 농업식품부의 산업보호한다는 불신	농업식품부·환경부·공기업부·해양부·상업무역고용부·보건어린이부 → 식품안전청(기존의 검사기관의 조정·감독, 보건어린이부 산하) [‘98]
네덜란드	BSE와 식품안전위기로 우려 제기, 중복분야 제거 등 효율성 제고, EU 식품안전법제의 이행	보건복지체육부(건강보호수의공중검사소)·농업자연식품부(축산물검사소) → 식품소비재안전청으로 통합(보건복지체육부 소속, ‘02) → 식품소비재안전청이 농업자연식품부로 이관 [‘03]
뉴질랜드	효율성 제고, 일관성 확보	보건부·농림부 → 식품기준청(농림부 산하) [‘02]
영국	BSE와 식품안전위기로 우려 제기, 식품관리자가 식품산업계에 호의적이라는 인식	농수식품부(식육위생국)·보건부 → 식품기준청(독립기구, 식육위생국 이관받음) [‘00]

\* 미국 GAO(회계감사원), 2005. 「Food Safety Experiences of Seven Countries in Consolidating Their Food Safety Systems」

**< 별첨 3 >**  
**식품안전기준설정 외국사례 비교**

국가명	동물약품	농약	미생물	관리기준 <sup>1)</sup>
한 국	식품의약품안전청		식품의약품청 (일반식품) 농업부 (축산식품)	
미 국	식품의약품청	환경보호청	식품의약품청 (일반식품) 농업부 (축산식품)	
독 일			소비자보호식품농업부	
스 웨 덴			농업식품소비자부	
덴 마 크	유 럽 의약품평가청 <sup>2)</sup>	환경보호청	가정소비자부	
아일랜드		농업식품부 <sup>3)</sup> (농약관리원)	식품안전청	식품안전청 농업식품부
영 국		환경식품농촌부 (농약안전원)	식품기준청	식품기준청 환경식품농촌부
프 랑 스		고용사회연대부	농림수산부	농림수산부 고용사회연대부
뉴질랜드		농림수산부(식품안전청)		
캐나다	보 건 부		농업식품부	
일 본	후생노동성		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	

- 1) 관리기준 : 시설기준, 위생감시기준, HACCP기준, 도축검사기준 등 식품안전관리(Management) 관련 기준
- 2) 유럽연합의 동물약품의 기준(MRL)은 유럽의약품평가청(EMEA)에서 최종결정함. 유럽의약품평가청(EMEA)의 수의약품위원회에 참가하는 회원국 대표기관은 독일 소비자보호식품청(BVL), 스웨덴 의약품청(MPA), 아일랜드 의약위원회(IMB), 영국 수의약품원(VMD), 프랑스 식품위생안전청(AFFSA), 덴마크 의약품청(DKMA)임.
- 3) 농약관리원(PCS), 농약안전원(PSD)임

#### < 별첨 4 >

### 외국의 식품안전체계 개편사례

#### □ 개요

국가	정책결정	평가업무	집행업무	식·의약품관리
영국	식품기준청	식품기준청	중앙 및 지자체	분리
독일	연방소비자보호 식품농업부	연방소비자보호 식품농업부	지자체	분리
호주	관계장관회의	식품안전청	중앙 및 지자체	분리
미국	FDA, 농무성 등	FDA, 농무성 등	중앙(축산물) 및 지자체	통합
일본	후생성, 농림성	식품안전위원회	중앙 및 지자체	통합

\* 국제기구(FAO/WHO)는 평가업무 및 정책결정은 단일기관에서, 집행업무는 복수의 관련 기관들이 수행할 것을 권고

#### □ 세부사항

- 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정책기능을 단일기관으로 통합하거나, 위원회를 신설하여 기관간 업무를 조정
  - ※ 단일기관 : 영국, 독일, 호주, 캐나다 등, 위원회 신설 : 일본
- 평가업무는 정책결정과 동일한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며, 최근 평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추세
  - 평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내부적으로 평가부서를 정책부서와 분리하여 운영하거나(독일, 호주), 아예 별도 기관으로 운영(일본, 프랑스)
- 집행업무는 지자체에서 주로 수행되며, 일부 국가에서는 수입식품 등 특정업무만 중앙정부에서 수행
- 대부분의 국가가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분리하여 운영
  - 미국과 일본이 통합관리하고 있지만, 내부 조직·예산은 분리 운영

## < 별첨 5 >

### FAO/WHO의 식품안전관리강화 지침

#### □ 식품안전관리 기본원칙

- ① 농장에서 식탁까지(integrated farm-to-table concept) 관리 :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든 단계에 대한 포괄적 관리가 필요하며, 최종단계 검사만으로 근본적 위해식품 관리가 곤란
- ② 위험분석(risk analysis) : 효과적인 식품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위험분석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
- ③ 투명성(Transparency) : 식품안전관리 성공여부는 식품안전관리의 통일성 및 효과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에 좌우  
※ 교류대상 정보 전문가 의견, 감시 결과, 식중독 사고 등
- ④ 규제영향평가(regulatory impact assessment) : 효과적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법규 준수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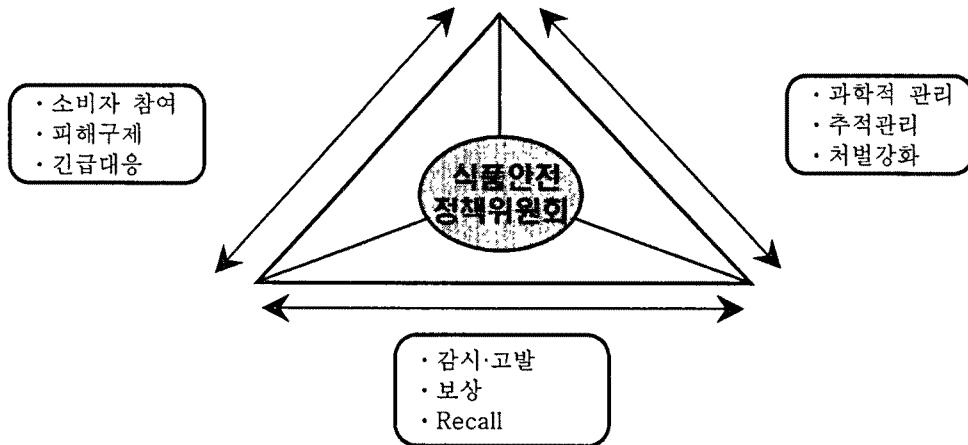
#### □ 바람직한 관리체계

- FAO/WHO는 식품관리체계를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로 분류
  - 복수기관체계(multiple agency system) : 식품의 종류별로 여러 기관이 안전관리를 담당(미국, 한국)  
※ 단점 : 국가차원의 총괄조정 부재, 집행단계에서 혼선과 비효율성, 시스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저하, 전문성과 재원의 차이로 인한 불균형적 집행 등
  - 통합체계(integrated system) : 법령 제정, 집행업무 조정 등은 단일기관에서, 현장집행, 교육 훈련 등은 복수의 기관에서 수행(영국, 호주, 캐나다, 일본등)  
※ 장점 : 식품안전관리의 일관성, 정치적 실현가능성, 정책결정과 집행의 투명성 강화 등
  - 단일기관체계(single agency system) : 단일기관에서 모든 식품안전 관련 업무 수행(덴마크, 독일)  
※ 가장 강력한 식품안전체계이나 사회경제적요인, 정치적 환경 때문에 실현가능성 매우 저조
- 3가지 유형중 통합체계를 장점이 많고 현실성이 높다는 이유로 회원국에 권고

## < 별첨 6 >

### 식품안전기본법 개요

정 부	
문제점	개선방안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충돌 조정기능 미흡</li> <li>◦ 정보공유협조 미흡</li> <li>◦ 사고예방 및 사후관리 미흡</li> <li>◦ 과학적 안전관리 미흡</li> <li>◦ 문제식품 추적 곤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신설</li> <li>◦ 식품안전정보관리체계 구축</li> <li>◦ 사고대응 긴급대응 구축</li> <li>◦ 과학적인 위험평가 의무화</li> <li>◦ 추적관리체계 구축</li> </ul>



소비자		사업자	
문제점	개선방안	문제점	개선방안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정책결정과정 참여 미흡</li> <li>◦ 피해자 권리 구제 곤란</li> <li>◦ 신고 보상 미흡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위원회 소비자 참여 보장</li> <li>◦ 소비자 분쟁 조정</li> <li>◦ 신고보상 강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자발적회수 미흡</li> <li>◦ 취약분야 관리 대 미흡</li> <li>◦ 처벌미흡</li> <li>◦ 위해식품 유통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Recall 의무화</li> <li>◦ HACCP 적용화</li> <li>◦ 부당이득 환수</li> <li>◦ 거래기록 의무화</li> </ul>

## < 별첨 7 >

### 식품안전기본법안 주요 내용 대비표

구분	정부안	고경화의원안	김선미의원안	강기갑의원안
다른 법률과의 관계	○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우선 적용, 식품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·개정하는 경우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함 (제4조)	○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우선 적용, 식품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·개정하는 경우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함 (제10조)	○ 식품안전관련법령을 제·개정하는 경우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함 (제10조)	○ 식품안전에 관련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, 식품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·개정하는 경우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함 (제9조)
기본 계획 수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(제6조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수립주체 : 국무총리</li> <li>- 수립주기 : 매3년</li> <li>- 수립절차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분야별 안전관리계획을 종합,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</li> <li>· 관계중앙행정기관장 및 지자체장은 매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식품안전에 관한 정부의 기본계획(제32조 및 제33조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수립주체: 식품안전위원회</li> <li>- 수립주기 : 매5년</li> <li>- 수립절차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식품안전위원회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이 소관 업무 관련 연도별 식품 안전정책 시행계획 수립</li> <li>· 식품안전위원회는 분야별 시행계획을 총괄하여 종합시행계획 수립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식품안전관련기본계획 수립 등(제11조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수립주체: 보건복지부장관</li> <li>- 수립주기 : 매3년</li> <li>- 수립절차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중앙행정기관의 식품안전 관련 계획 및 시책을 종합, 식품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</li> <li>· 관계 중앙 행정 기관장, 시·도지사는 매년 식품 안전 관리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식품안전복표(제10조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식품안전위원회는 식품안전관리의 목표를 3년마다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함</li> </ul> </li> <li>○ 기본계획 수립(제11조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수립주체: 식품안전 위원회</li> <li>- 수립주기 : 매3년</li> <li>- 수립절차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관계행정기관장의 협조를 받아 수립,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</li> <li>· 관계행정기관장, 시·도지사는 매년 식품안전 관리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</li> <li>· 위원회는 매년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결과를 평가, 국무총리에게 보고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
위원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식품안전정책위원회(제7조 내지 제14조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소속 : 국무총리</li> <li>- 성격 : 심의위원회</li> <li>- 구성 : 20인 이내 (위원장 포함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위원장 : 국무총리</li> <li>· 위원 : 관계부처 장관(재정부·교육부·법무부·농림부·복지부·해양수산부), 국무조정실장 및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위원 (식약청장 배석)</li> <li>- 임기 : 2년, 연임 가능</li> <li>- 운영 : 전문위원회와 사무 기구를 둠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식품안전위원회(제34조 내지 제40조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소속 : 대통령</li> <li>- 성격 : 심의위원회</li> <li>- 구성 : 15인 이상 25인 이내 (상임위원장 1인 포함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위원장 :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위촉</li> <li>· 위원 : 교육부·농림부·복지부·해양수산부 장관, 식약청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(간사위원장 : 복지부장관)</li> <li>- 임기 : 3년, 연임 가능</li> <li>- 운영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심의결과, 식품안전정책 추진결과를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통보</li> <li>·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자체의 추진결과를 점검·평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</li> <li>· 간사위원장은 사무국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식품안전위원회(제35조 내지 제46조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소속 : 대통령</li> <li>- 성격 : 심의위원회</li> <li>- 구성 : 15인 이상 25인 이내 (상임위원장 1인 포함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위원장 : 교육부·농림부·복지부·해양수산부 장관, 식약청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(간사위원장 : 복지부장관)</li> <li>- 임기 : 3년, 연임 가능</li> <li>- 운영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심의결과, 식품안전정책 추진결과를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통보</li> <li>·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자체의 추진결과를 점검·평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</li> <li>· 간사위원장은 사무국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식품안전위원회(제29조 내지 제41조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소속 : 국무총리</li> <li>- 성격 : 행정위원회(정부조직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소관사무를 수행)</li> <li>- 구성 : 대통령이 위촉하는 9인 위원장(인), 부위원장(인) 포함)의 민간위원</li> <li>- 임기 : 3년, 연임 가능</li> <li>- 사무처와 전문위원회를 둠</li> </ul> </li> </ul>

<b>긴 급 대 응</b>	<p>○ 긴급대응(제15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식품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,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대응체계 구축·운영</li> <li>-관계행정기관장은 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, 긴급대응방안을 마련,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치를 하여야 함</li> <li>-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긴급대응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후에 위원회 심의 가능</li> </ul>	<p>○ 위해식품에 대한 긴급조치(제15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긴급한 사태에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경우(식품테러, 식중독 등 발생, 유독·유해물질 과다검출, 식품에 기인한 사고 또는 사상자 발생, 중앙·지자체장의 요청, 기타 식약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) 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하여금 출입·조사·검사 등을 하게 하여야 함</li> </ul>	<p>○ 식품위해사고에 대한 긴급대응체계 구축(제12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식품으로 인한 중대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긴급대응체계를 구축·운영</li> </ul>	<p>○ 신속대응(제19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식품으로 인한 긴급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및 체계 마련·정비</li> <li>-식품안전위원회 및 관계행정기관장은 식품에 의한 위험 발생 또는 발생 우려시 긴급경보를 발령하고, 원인 규명시까지 당해 식품 생산유통과정 잠정 금지 가능</li> <li>-식품안전위원회 및 관계행정기관장은 시·도지사에게 긴급명령을 발령하도록 하고 필요한 조치 권고 가능</li> </ul>
<b>식 품</b>	<p>○ 생산·판매 등의 금지(제16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관계행정기관장은 긴급대응이 필요한 식품등에 대해 위해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생산·판매등 금지 가능</li> <li>-금지 사유가 없어졌을 때 지체없이 해제</li> <li>-사업자는 이의가 있는 경우 해제 요청 가능</li> </ul>		<p>○ 사전예방조치(제14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관계중앙행정기관장 및 지자체장은 식품에 의해 발생 또는 발생우려시 당해 식품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생산·채취·제조·가공·수입·조리·저장·운반 및 판매를 금지하여야 함</li> </ul>	
<b>안 전 관 리 제 도</b>	<p>○ 검사명령(제17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관계행정기관장은 긴급대응이 필요한 식품, 위해발생우려가 있는 식품등을 생산·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관계행정기관장이 지정·고시하는 검사기관의 검사를 명할 수 있음</li> <li>-검사기관은 검사결과를 사업자 및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함</li> </ul>	<p>○ 검사명령(제16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위해발생 또는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검사를 명할 수 있음</li> <li>-사업자는 즉시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</li> </ul>	<p>○ 출입·수거·검사(제17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관계중앙행정기관장 및 지자체장은 사전예방조치, 신속조치, 추적조사의 기록 보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 장소에 출입 및 검사, 서류 열람, 식품 수거를 할 수 있음</li> </ul>	
<b>추 적 조 사</b>	<p>○ 추적조사(제18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관계행정기관장은 식품등의 생산·판매등의 이력을 추적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</li> <li>-관계행정기관 합동조사 실시</li> <li>-사업자는 식품 등의 생산·판매 관련 사항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함</li> </ul>	<p>○ 추적조사 및 자료의 기록 및 보관(제17조 및 제18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국가는 국내외 식품위해 발생 또는 발생우려시, 위해 정보입수시 추적조사 가능</li> <li>-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당해 농·임·축·수산물의 재배, 양식, 사육 등의 금지, 식품 등의 생산·제조·가공, 수입·제조·수산물 유통, 조리, 판매금지를 명할 수 있음</li> <li>-사업자는 추적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최종기재일부터 3년간 기록·유지</li> </ul>	<p>○ 추적조사 관리체계 구축(제13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식품, 식품첨가물, 사료와 그 원료가 되는 동·식물 등으로 인해 중대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추적조사 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구축</li> </ul>	<p>○ 추적관리(제18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국가는 중대한 식품위해 요소 발생 또는 발생우려시 추적조사할 수 있는 추적관리체계 마련</li> </ul>

<b>식 품 회 수</b>	<p>○식품등의 회수(제19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사업자는 법령에 정한 기준·규격 위반 식품을 지체없이 회수하여야 함</li> <li>-회수사유, 회수계획 및 현황을 소비자에 공개</li> </ul>	<p>○통지 및 회수의무(제11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사업자는 식품이 안전성에 관한 법령상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영업허가(신고) 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당해 식품을 회수하여야 함</li> <li>-그 식품이 유통된 때에는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품회수현황 및 사유를 공개</li> </ul>	<p>○신속조치(제15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관계중앙행정기관장 및 지자체장은 위해발생 또는 위해발생우려 식품을 회수, 암류, 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, 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함</li> </ul>	
<b>위 해 성 평 가</b>	<p>○위해성평가(제20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관계중앙행정기관장은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·규격 제·개정시, 위해발생여부 판단을 위해사전에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</li> <li>-긴급대응 필요시 사후에 위해성평가를 실시</li> <li>-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해성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규정</li> </ul>	<p>○위해성평가의 실시(제12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국가는 위해우려가 있는 생물학적·화학적·물리적인 요인 또는 상태로써 식품에 포함되거나 포함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에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</li> <li>-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규정(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후에 실시)</li> </ul>	<p>○위해평가(제18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국가는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해 위해평가를 실시하여야 함</li> <li>-위해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규정</li> <li>-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후에 위해평가 실시</li> </ul>	<p>○식품등의 안전성평가의 실시(제14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식품안전위원회는 식품에 위해요소 함유 또는 함유우려시 안전성평가를 하여야 함</li> <li>-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규정(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후에 실시)</li> <li>-일정수이상의 국민이 안전성평가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안전성평가 실시</li> <li>-안전성평가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,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식품생산유통과정을 잠정 중단시킬 수 있음</li> </ul>
<b>신 종 식 품 안 전 관 리</b>	<p>○신종식품의 안전관리(제21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, 생산된 농수축산물 및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던 것을 식품으로 생산·판매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안전관리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</li> </ul>		<p>○새로운 식품의 안전관리(제22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신개발원료,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료로 제조·조리된 새로운 식품의 위해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함</li> </ul>	
<b>식 품 H A C C P 기 준</b>	<p>○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(제22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관계행정기관장은 식품등의 생산·판매과정에서 위해요소의 사전 중점관리를 위한 제도를 도입·시행하여야 함</li> <li>-제도적용 사업자에 대한 기술 및 자금 지원 가능</li> </ul>		<p>○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(제21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국가 및 지자체는 유해물질의 식품 혼입 또는 오염방지를 위해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기준을 도입하거나 그 적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</li> </ul>	<p>○식품안전의 과학적 관리(제17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국가, 지자체 및 사업자는 식품생산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, 제어하기 위해 과학적 식품안전관리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·확대해 나가야 함</li> </ul>
<b>표 시 제 도</b>			<p>○표시제도(제20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국가는 식품안전에 관련되는 정보 등 식품 구매에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제도를 마련하여야 함</li> </ul>	

수입식품의 안전관리	<p>○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(제14조)</p> <p>- 국가는 국내 수입식품 및 이를 생산·제조·가공하는 외국사업장에 대하여 국내기준 또는 국제기준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등록·관리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함</p>			
식품안전기준설정			<p>○ 식품안전기준 설정 (제13조)</p> <p>- 식품안전위원회는 식품안전관리정책 마련시 모든 식품등에 대하여 안전기준을 설정하여야 함</p>	
정보공개	<p>○ 정보공개 등(제24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식품안전정보의 공개와 관리를 위해 식품안전정보관리체계 구축·운영</li> <li>- 식품안전정책 수립시 사업자, 소비자 등 이해당사자에게 정보 제공</li> <li>- 사업자가 식품안전법령을 위반한 경우 해당 식품등 및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 가능</li> <li>- 일정수 이상의 소비자가 불특정 다수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</li> </ul>	<p>○ 공표(제20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위해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함</li> <li>- 사업자의 식품관련법령 위반행위중 위해식품의 생산·제조·가공·수입·유통·조리·판매 등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업소명, 제품명, 위반내용 등을 공개 가능</li> <li>- 동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집행확정전이라도 인적, 물적 증거가 명백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객관적·과학적으로 검증된 경우, 사전에 식약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위 정보를 공개 가능</li> </ul>	<p>○ 소비자보호를 위한 조치 (제25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위해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함</li> <li>- 위해식품의 생산 등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업소명, 제품명 등 알기 쉽게 공개하도록 함</li> </ul>	<p>○ 소비자 보호조치(제20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식품안전위원회, 관계행정 기관장, 지자체장 및 사업자는 식품안전정보를 수집하여 즉시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</li> </ul>
소비자보호	<p>○ 소비자의 참여(제28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관계행정기관은 식품안전에 관한 각종 위원회에 소비자를 참여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함</li> <li>- 일정수 이상의 소비자가 식품등에 대한 시험분석, 시료채취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</li> <li>- 동일한 소비자가 동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등 예외 규정을 둠</li> </ul> <p>○ 신고인 보호 및 포상금 지급(제29조 및 제30조)</p>	<p>○ 소비자의 권리(제21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식품상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,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, 정책·입법등에 참여할 권리, 피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는 권리, 식생활 교육을 받을 권리</li> </ul> <p>○ 식품 피해의 구제(제25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식품소비자 피해보상기준을 제정할 수 있음</li> </ul>	<p>○ 소비자의 참여보장(제24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가, 지자체 및 식품사업자에게 식품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</li> </ul> <p>○ 소비자교육·홍보(제26조)</p> <p>○ 신고자 보호(제28조)</p> <p>○ 소비자피해 보상(제29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복지부장관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 해결을 위해 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제정할 수 있음</li> </ul>	<p>○ 소비자교육 및 홍보(제21조)</p> <p>○ 신고자 보호(제23조)</p> <p>○ 소비자 피해의 구제(제24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식품안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제정할 수 있음</li> </ul>

<p><b>식품 안전 분쟁 조정 / 식품 집단 소송</b></p>	<p>○ 식품안전분쟁조정위원회 (제31조 내지 제35조) -설치 : 국무총리 소속하여 중앙식품안전분쟁조정위원회, 시·도에 지방식품분쟁조정위원회 -성격 : 심의·의결기구 -구성 : 20인 이내의 위원(위원장 포함) -회의 :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7인이상 10인이 하의 위원으로 구성 ○ 분쟁조정의 절차 등(제36조 내지 제39조, 제41조) -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 조정위원회의 결로 60일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-수락효력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 -일방당사자의 소 제기시 분쟁조정절차 중지 ○ 분쟁조정의 특례(집단분쟁조정 : 제40조) -국가, 자자체, 소비자단체, 사업자는 다수 소비자에게 동일·유사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의뢰·신청할 수 있음</p>	<p>○ 식품관련집단소송(제26조 내지 제31조) -식품으로 인한 피해자가 20인이상이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쟁점이 공통된 경우 제기 가능 -식품사업자가 하자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때에는 식품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 -법원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징벌적 의미의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음</p>	<p>○ 식품집단소송(제30조 내지 제34조) -동일식품등의 섭취로 20인 이상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(식품집단소송) 제기 가능</p>	<p>○ 분쟁조정위원회(제25조 내지 제28조) -설치 : 중앙식품안전분쟁조정위원회, 시·도에 지방식품안전분쟁조정위원회 설치 -구성·운영·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함</p>
<p><b>통합 전산 체계</b></p>	<p>○ 정보공개 등(제24조) -식품안전정보의 공개와 관리를 위해 종합적인 식품안전정보관리체계 구축·운영</p>	<p>○ 통합적 식품안전정보관리체계(제19조) -식품안전정보의 관리 및 공유를 위하여 통합적 식품안전정보관리체계를 구축·운영</p>	<p>○ 통합전산정보체계(제23조) -식품안전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통합전산정보망 구축·운영</p>	<p>○ 식품안전의 기반조성(제16조) -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</p>
<p><b>식품 시민 감사인</b></p>		<p>○ 식품시민감사인(제24조) -사업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식품시민감사인으로 선임 가능 -시민식품감사인을 선임·운영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지도점검 면제, 세제 혜택 부여,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경감 가능</p>		
<p><b>벌칙</b></p>	<p>○ 벌칙 및 과태료(제42조 및 제43조) -생산·판매가 금지된 식품 등의 생산·판매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-긴급대응이 요구되는 식품 등에 대한 검사명령 불이행, 생산·판매 이력 기록·보관의무 불이행 등 500만원이하 과태료</p>	<p>○ 식품관련범죄에 대한 대처(제42조 및 제43조) -식품안전법령의 벌칙규정을 위반하여 취득한 범죄 수익 몰수 가능(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준용) -사업자가 상습으로 식품안전법령의 벌칙규정을 위반한 경우 2년이상의 징역에 처함</p>		

		<p><b>○ 벌칙 및 과태료(제44조 내지 제47조)</b></p> <p>- 추적조사결과 농임축수산물 재배 등 금지 및 식품 생산 등 금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</p> <p>- 긴급조치 불협조, 검사명령 불응, 추적조사를 위한 자료의 기록·보관의무 위반시 500만원이하 과태료</p> <p>- 위의 경우 과태료 외에 90일 이하의 영업정지명령 가능</p> <p>- 양벌규정 적용</p>		
부칙	<p><b>○ 시행시기</b> - 광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</p>	<p><b>○ 시행시기</b> - 광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- 집단소송 : 2008년 1월 1일</p>	<p><b>○ 시행시기</b> - 2006년 1월 1일 - 식품집단소송 규정은 2008년 1월 1일</p>	<p><b>○ 시행시기</b> - 광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-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도록 한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</p>